

2023 총회 보고서

* 일시 : 2023. 1. 29(일) 18:00

* 장소 :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koreandiakonia.org kd@koreandiakonia.org

목차

01. 조직	
가. 회원 명부	3
나. 법인 이사 명부	3
02. 회의록	
가. 총 회	4
나. 이사회	5
03. 2022년 사업보고	7
04. 2022년 감사보고	9
05. 2022년 결산보고	11
06. 2023년 사업계획	12
07. 2024년 예산안	15
08. 법인 정관	16

1. 조직

가. 회원명부

- | | |
|-------------------------|-------------------------|
| 강성웅(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소장) | 고명길(소망의교회) |
|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김민섭(한국의료복지선교회) |
| 김병삼(만나교회) | 김성이(한국관광대학교) |
| 김양원(신망애교회) | 김정규(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회장) |
| 김종익(울산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김해성(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
| 박종일(오창대광교회) | 박홍자(맛샘캐터링 대표) |
| 옥성석(충정교회) | 옥재부(울산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 유명운(용인 사랑의집 시설장) | 유장춘(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 교수) |
| 육광철(백석총회 사회국장) | 이성철(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 원장) |
| 이재덕(사회복지법인 자립성덕헌 원장) | 이재천(CBS기독교방송) |
| 이종관(울산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 | 이창연(스포츠서울INB) |
| 장경준(선한이웃네트워킹) | 전병호(군산나운복음교회) |
| 정근두(울산교회) | 조종남(장충단교회 명예목사) |
| 진희근(승리교회) | 최정봉(성광교회) |
| 추연호(은파교회) | 하정열(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이사장) |

나. 법인이사 명부

- | | |
|--------------|-------------------|
| 오정현 (사랑의교회) |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김태영 (백양로교회) | 노영상 (총회한국교회연구원) |
| 신관우 (부산CBMC) | 이형규 (쿠팡출판사) |
| 전광식 (고신대학교) | 전태식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
| 천 환 (인천예일교회) |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

※ 가나다순

2. 회의록

가. 총회 회의록

월드디아코니아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2022년 1월 10일(월) 10:30 - 11:00

장 소 : 사랑의교회 북미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

■ 회의

1. 회원점명 및 개회

의장이 대의원을 점명하니 38명중 22명 참석, 위임 8명으로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고하고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 가부를 물으니, 유인물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을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보고사항

가.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1년 사업 및 결산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다.

나. 2021년 감사보고

2021년 감사 결과를 김옥현 감사가 보고하다.

5. 결의사항

가. 의안1.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다.

나. 의안2. 임원선임

2022년 3월 23일자로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임하기로 하다.

1)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신임 이사장에 오정현 목사의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2) 임기만료 이사 선임의 건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이사) 선임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가결하기로 하다.

◇ 임기만료 : 정성진 고명진 김봉준 김종생 손인웅 유만석 정무성(2018.07.17-2021.07.16)

◇ 신임추천

이사장 : 오정현(2022.03.23-2025.03.22)

이 사 : 김태영 노영상 전광식 한기채 천 환 김성이 전태식 신관우 이형규
(2022.03.23-2025.03.22)

◇ 퇴임이사

정성진 고명진 김봉준 김종생 손인웅 유만석 정무성

다. 주사무소 이전

주사무소를 2022년 3월 23일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2로 이전하기로 하다.

6. 폐회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 사항에 관한 절차와 결의를 마쳤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제안하다. 만장일치로 허락하며 손인웅 목사의 기도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같은 날 오전 11:00이었다.

2022년 1월 10일

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

월드디아코니아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22년 1월 10일(월) 10:00 - 10:30

장 소 : 사랑의교회 북미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

■ 회의

정성진 이사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다.

1. 개회기도

김성이 교수가 개회기도를 하다.

2. 회원점명 및 개회

사무총장이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 3명 위임 2명으로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정원이 되어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다.

○ 참석 : 정성진 김종생 손인웅

○ 위임 : 고명진 정무성

○ 불참 : 유만석 김봉준

○ 배석 : 김옥현(감사) 박홍자(감사) 천영철(사무총장)
김동배 김성이 김한호 박종삼 오정현

3.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을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2022년 총회 보고사항

가. 2021년 사업보고를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2021년 감사보고를 김옥현 감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2021년 결산보고를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라.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2022년 총회 부의사항

가.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신임 이사장으로 오정현 목사의 선임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가결하다.

나. 월드디아코니아 임기만료 이사 선임의 건

임기만료 이사 선임의 건은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하기로 하고, 미진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 임기만료 : 정성진 고명진 김봉준 김종생 손인용 유만석 정무성(2018.07.17-2021.07.16)

◇ 신임추천

이사장 : 오정현

이 사 : 김태영 노영상 전광식 한기채 천 환 강대홍 김성이 전태식 신관우 이형규
(2022.03.23-2025.03.23)

◇ 퇴임이사

정성진 고명진 김봉준 김종생 손인용 유만석 정무성

■ 폐회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 사항에 관한 절차와 결의를 마쳤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제안하다. 만장일치로 허락하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같은 날 오전 10:30이었다.

2022년 1월 10일

3. 2022년 사업보고

1. 2022 섬김의 비전 선포 예배

- 가. 일시 : 2022년 1월 10일(월) 오전 11시
- 나. 장소 : 사랑의교회 본당
- 다. 참석 : 2022 위촉 임역원 및 회원, 협력기관 관계자, 교계 지도자 등 300여명

2. 아이티 직업학교 운영 지원

- 가. 현황 : 아이티 직업학교 개설(2016년 3월 10일) 및 운영
- 나. 내용 :
 - 매년 4개월 3학기 과정으로 영어, 컴퓨터, 스페인어학과 운영, 약170여 명이 재학
 - 겨울방학 특강(영어, 컴퓨터)
 - 유치원과 초등학교 200여 명 재학
 - 매주일 현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배
 - 커뮤니티센터의 활용(결혼식, 주민모임)

3. 캄보디아 캄뵁츠낭 주 공립초등학교 도서보급 사업

- 가. 일시 : 2022년 7월16일
- 나. 대상지역 : 캄뵁츠낭 주 쫘끼리 23개학교
- 다. 도서보급 : 총 6,449권 (망고나무출판사, Reading Books, Sipar Books, Idea Books)
- 라. 협력 : 캄보디아 교육부 / 캄뵁츠낭 주 교육부 / 쫘끼리 군 교육부
- 마. 책장 : 목재 책장 총 23개 (150*50*120 사이즈)
- 바. 교육기자재 : 지구본, 크마에 낱말카드 등

번호	학교명	학생	도서수	번호	학교명	학생	도서수
1	꼼뵁클랑	132	193	13	훈센꼼뵁얼	226	256
2	똥레끄랄	199	256	14	쿰트마이	99	128
3	르쎬이병곳	138	193	15	뵁따마	340	384
4	뵁렉뜨릭	139	193	16	언룽어	55	128
5	꼼뵁바뜨리으	388	448	17	뵁츠까흐	410	512
6	뵁뜨렁	178	256	18	언룽메뜨러이	148	193
7	뵁뵁뵁	156	180	19	플렁	160	193
8	따문르	226	293	20	끄발건럭	356	448
9	격크떠으	275	320	21	프레이끄리뜨봉	415	512
10	따물끄라	135	193	22	쥁툼	192	256
11	꺼쭈룩	181	256	23	프레이끄리쯔	701	768
12	뵁쯔러이	67	128				3,540
		2,214	2,909		총계	5,316명	6449권

4. 캄보디아 장학사업

가. 대상 : 캄봉츠낭 주 관내 중고등학생 37명, 대학생 8명

나. 장학금 : 중,고등학생 1인당 월 \$30, 대학생 연 \$500 지급

5. 연대사업

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원단체

6. 홍보사업

가. 홈페이지 운영

국문 홈페이지 <http://www.koreandiakonia.org>

영문 홈페이지 <http://en.koreandiakonia.org>

나.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D1225>

유 튜 브 <http://www.youtube.com/c/한교봉KD>

다. 언론광고

감 사 보 고 서

(사)월드디아코니아 귀하

본 감사는 2023년 1월 18일 4시부터 귀 기관의 2022년도 중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3. 1. 18.

감사 김 임 권

감사 김 대 권

별 첨 : 감사의견서 1부 끝.

감 사 의 견 서

2. (사)월드디아코니아

가. 감사에 임하면서 다음의 장부 및 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1) 수입 지출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입출금 전표
- 2) 각종 영수증 확인 및 편철상태
- 3) 수령한 세금계산서 편철보관상태
- 4) 각종 공문서 수발 및 정리상태
- 5) 지출 계정별로 타당하게 지출하였는지 등

나. 수입 및 지출(전년도 이월금포함)을 검토한바

2021년도 이 월 금 : 114,008,965원

2022년도 총 수입금액 : 27,838,590원

2022년도 총 지출금액 : 66,689,006원

잔 액 : 75,158,549원입니다.

(통장잔고 75,084,347원 /보유현금 및 사업비환전 74,202원)

다. 감사결과 월별 재정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각종 부책 등의 정리도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영수증 은행잔고증명 등 관계 자료를 검토한바 정확하였습니다.

5. 2022년 결산보고서

2022년 월드디아코니아 결산서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이월금 (단위: 원)

관	항	목	2021년 이월금	산출근거(비고)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14,008,965	전년이월금

수입부 (단위: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비고)
후원금	후원금	캄보디아 지정후원금	25,119,850	캄보디아지정후원금
		소계	25,119,850	
집수입	집수입	이자수입	99,160	정기예금(보통예금)이자수입
		잡이익	7,650	자동이체, 원단위 할인 등
		소계	106,810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세금	17,180	선납법인세(공제초과분)환급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2,594,750	인건비에 대한 세금 공제분
합계			27,838,590	

지출부 (단위: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비고)
사무비	운영비	지급수수료	1,416,840	전년도법인결산조정수수료/인감증명서발급 외
		제세공과금	1,725,190	4대보험료
		소계	3,142,030	
	인건비	급여	26,460,000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962,480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소계	27,422,480	
합계			30,564,510	
기타사업	기타사업	캄보디아 지부 사업	26,775,646	캄보디아(희망도서관)사업지원
		기타사업	500,000	기타사업 진행경비
		사업운영관리비	6,420,000	사업운영관리
		소계	33,695,646	
합계			33,695,646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선납세금	14,030	이자수입에 대한 선납법인세
		소계	14,030	
		합계	14,030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2,414,820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개인공제분 외
합계			2,414,820	
총계			66,689,006	

2022년 결산	이월금	114,008,965
	총수입	27,838,590
	총지출	66,689,006
지정기금	잔액	75,158,549
	기본자산	50,000,000
	차기이월 사업준비금	25,158,549
총잔액		-

6. 2023년 사업계획

1. 조직사업

- 가. 사업목표
 - 임원 및 회원 조직관리 및 확대사업
-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다. 사업내용
 - 정기 임원회의 및 임원 간담회
 -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 라. 사업예산
 - 10,000,000 원

2. 해외 재해구호 사업

- 가. 사업목표
 - 지진, 태풍 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 및 긴급구호
- 나. 사업기간
 - 2023년 해외 재해발생시
- 다. 사업내용
 - 재해발생시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고 초기 긴급구호 사업 진행
 - 신속한 초기 실사 및 구호활동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조성
 - 재해 모금활동 및 구호/복구사업
-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해외사업본부
- 마. 사업예산
 - 20,000,000 원

3. 해외 개발협력 및 교육사업

1) 아이티 직업학교 지원사업

- 가. 사업목표
 - 아이티 카라콜 지역에 설립한 직업학교 (Korean-Haitian Professional School) 지원 사업
-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다. 사업내용
 - 직업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
 - 직업학교현장 방문(연1회)

-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해외사업본부
- 마. 사업예산
 - 10,000,000 원

2) 캄보디아 희망도서관 사업

- 가. 사업목표
 - 캄보디아 초등학교 아동도서 보급 및 도서관 지원
-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다. 사업내용
 - 월드디아코니아 캄보디아 (2015년 4월 1일 설립, 지부장: 최수철 목사)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 교육청소년체육부와 협력
 - 국내 아동서적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해 출판 및 보급
 - 캄퐁츠낭 쓰루눅 희망 어린이 도서관 설립 지원
- 라. 사업주관: 월드디아코니아 캄보디아
- 마. 사업예산
 - 30,000,000 원

4. 홍보사업

- 가. 사업목표
 - 단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
 - 아이티 직업학교 후원 캠페인
-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다. 사업내용
 - 온라인 홍보
 -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페이스북, 유튜브)
 - 언론사 홍보
 - 사업별 보도자료 배포
 - 사업현장 동행취재 지원
 - 신문 및 방송 광고
 - 해외재난지역 모금 캠페인 전개
 - 홍보 대사 선정 및 홍보
 - 홍보물 제작
 - 2022년 연차보고서 제작
 - 홍보용 리플렛, 홍보키트 제작
 - 각종 자료집 제작 및 도서발행(도서출판 KD)
- 라. 사업예산

○ 20,000,000원

6. 연대사업

가. 사업목표

○ 유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다. 사업내용

1)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3) 각 교단 사회봉사부 및 교계연합단체

라. 사업예산

○ 5,000,000원

7. 2023년 예산(안)

월드디아코니아 2023년 예산(안)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수입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3년 예산금액
후원금	사업후원금	95,000,000
기타수입	잡이익,기타수입	36,760,000
총 계		131,760,000

■ 지출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3년 예산금액
사무비	운영비	4,000,000
	업무비	3,000,000
	인건비	29,760,000
	소 계	36,760,000
사업비	1. 조직사업	10,000,000
	2. 해외 재해구호 사업	20,000,000
	3. 해외 개발협력 및 교육사업	40,000,000
	4. 홍보사업	20,000,000
	5. 연대사업	5,000,000
	소 계	95,000,000
총 계		131,760,000

8. 월드디아코니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World Diakonia'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장, 외교통상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이재민과 피해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 및 지원과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필요시 해외 각 도시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2. 해외 자원봉사운동의 전개 및 교육
3. 해외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4. 국내외 기부문화 확산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한다.

②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

구할 수 없다.

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는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아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위촉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② 1항에 해당되지 않은 대의원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되는 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3월에 공개해야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7장 사무 부서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9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사업단을 둘 수 있다.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12년 2월 6일 제정

2018년 5월 21일 개정